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0
----------	-------

제출일자 : 2023. 3. 8.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 가. “주민”의 정의에 관내 소재 초·중·고등·대학교 학생 및 교원 등을 추가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나. 예산과정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11조제1항)
- 라. 지역회의 위원 재정지원 범위 포함(안 제25조제3항)
- 마. 제도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안 제2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재정법」 제39조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3. 2. 7. ~ 2. 27.)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다.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라.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원 등 임직원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하여”를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30인”을 “5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를 “사회적약자의 참여를 보장하

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로 한다.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공개추첨”을 각각 “무작위추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한 번만”을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제14조제5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군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협의회”를 “연구회”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과 연구회 위촉직회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역회의 위원, 연구회 위촉직 회원”으로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상 특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주민”</u>이란 <u>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p><신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민”</u>이란 <u>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다.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이란 <u>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u> 3. <u>“청소년”</u>이란 <u>「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 4. <u>“청년”</u>이란 <u>「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
<p>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u>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하여</u>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법령준수의무) ----- ----- 「지방자치법」 제47조 ----- -----, <u>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위하여</u> ----- -----.</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구성) ① ----- ----- 50인 ----- -----.
제11조(구성)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 ,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구성) ④ ----- 사회적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 ,----- -----.
제11조(구성) ⑥ 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천 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천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구성) ⑥ ----- ----- 무작위 추천 ----- ----- 무작위 추천 ----- -----.
제12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 임기) ① ----- ----- 한 차례만 ----- -----.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 2.~ 4. (생략) 5.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기능) ----- -----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2.~ 4. (현행과 같음)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예산안 심의 및 편성에 대한 <u>군의회</u>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p>	<p>제16조(운영원칙)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의회</u> -----</p>
<p>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p> <p>⑤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u>협의회</u> 사무를 처리한다.</p>	<p>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p> <p>⑤ ----- ----- -- <u>연구회</u> -----.</p>
<p>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③ <u>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과 연구회 위촉직회원</u>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③ <u>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역회의 위원, 연구회 위촉직 회원</u>----- ----- ----- ----- ----- -----.</p>
<p>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p> <p><신설></p>	<p>④ <u>군수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신설></p>	<p>제26조(포상) <u>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u></p>
<p>제26조(시행규칙) (생략)</p>	<p>제2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가. 조례안 제25조(재정 및 실무 지원)
- 나. 조례안 제26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예산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확대에 따른 참석 수당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약 7,200천원 / 연
 - 참석수당 지급 대상 20인 X 연 4회 X 90천원
- 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참석에 따른 참석 수당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약 10,800천원 / 연
 - 참석수당 지급 대상 180인 X 연 3회 X 20천원
- 다.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대회 시상금
 -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대회 시상금 : 약 1,200천원 / 연
 - 시상금 지급 대상 6인 X 연 1회 X 200천원

4. 작성자 : 기획예산실 예산팀장